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통일조정 대상업체 대표이사 귀하

(경유)

제목 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

- 관련 : 의약품허가총괄과-470호('24.05.29.)
- 우리 처(의약품허가총괄과)는 의약품 제조판매(수입) 품목 중 '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'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-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'24.10.30.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,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  
(단,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
나. 종이 허가증인 경우

- 해당품목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	
년 월 일	내 용	
2024.10.30. ↑ 변경일자	사용상의주의사항 ↑ 변경명령 항목 기재	(의약품허가총괄과 호, 2024.07.30.) ↑ 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※ 참고 :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(관련: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)

-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(통일조정안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

다. 전자 허가증인 경우,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

라.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“전문가를 위한 정보”가 기존 허가사항에 없는 경우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17조제2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각 품목별로 변경 허가(신고)를 신청할 것

4.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<https://nedrug.mfds.go.kr>) ‘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 허가승인 > 변경명령’ 참조

- 붙임 1. 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 통일조정 대상품목.  
2. 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 허가사항 변경대비표.  
3. 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 통일조정(안)(사용상의주의사항).  
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심사원	보건연구사(승 진예정자)	의약품허가총 전결 2024. 7. 30. 괄과장
협조자		
시행	의약품허가총괄과-1818	접수
우 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약품허가총괄과	/ <a href="http://www.mfds.go.kr">www.mfds.go.kr</a>
전화번호 043-719-2312	팩스번호 043-719-2300	/ <a href="mailto:kwh721@korea.kr">kwh721@korea.kr</a> 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